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귀중

제 출 일: 2016년 3월 14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 삼성동빌딩 16층
전화번호: 02-3708-5678

I. 권유자·대리인·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아이마켓코리아	보통주	747,215	2.08%	본인	자기주식

※ 당사는 2015.12.31 기준, 자기주식 747,215주(2.08%)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인터파크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14,380,000	40.01%	최대주주	-
강동화	계열사임원	보통주	3,900	0.01%	계열사임원	-
이수성	등기임원	보통주	4,440	0.01%	등기임원	-
계	-	-	14,388,340	40.03%	-	-

※상기 주식소유 수량 및 주식소유비율은 2015.12.31 기준입니다.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학재	-	-	직원	-
박혜연	-	-	직원	-

3.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2015년 12월 31일 기준)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 2016년 3월 17일,
(종료일) - 2016년 3월 29일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권유자 또는 대리인이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http://evote.ksd.or.kr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안내여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안내

다.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3월 29일 오전 9시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 삼성동빌딩
16층 대강당

라.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 박혜연
(부서 및 직위) - 경영관리팀 차장
(연락처) - 02-3708-8374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B2B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B2B 전자상거래업이며, 통계청 분류상 ‘중개자 주도형 B2B 전자상거래’에 해당되고 취급 품목 기준으로 보면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에 해당됩니다. 구매에서부터 관리까지 전반에 걸쳐 온라인상에서 B2B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사에게 기업 운영 자원의 구매와 관련,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부분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구매 프로세스를 구성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주 여러분의 성원과 전 임직원의 노력으로 2015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 1,4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12.0% 성장한 637억원, 당기순이익은 12.3% 성장한 496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별도기준으로 매출액은 2조 6,050억원, 영업이익은 467억원, 당기순이익은 4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주요 사업인 B2B 전자상거래에서 국내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5년 (주)대상, (주)하림, (주)홈플러스베이커리 등 신규고객을 수주함으로써 지속 성장에 대한 기쁨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내외에서 신규 고객을 확대하여 B2B 전자상거래업계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더불어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2014년 4월에 인수한 안연케어는 계획했던 것보다 조기에 사업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며, 의료유통 분야에서도 역량을 강화한 한 해였습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의료유통 업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입찰 시장 진출 및 진료재료 사업 확장으로 기존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당사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차후 공시에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제 16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15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자산				
유동자산		1,025,328,639,159		866,236,952,317
현금및현금성자산	49,461,553,014		135,380,305,761	
매출채권	844,329,407,580		652,321,786,770	
기타수취채권	1,566,121,741		2,821,339,490	
기타금융자산	11,208,781,209		22,434,645,997	
당기법인세자산	275,339,396		25,535,390	
재고자산	104,394,147,103		48,154,276,428	
기타유동자산	14,093,289,116		5,099,062,481	
비유동자산		240,976,977,286		224,249,254,667
장기매출채권	25,103,550		45,175,366	
기타수취채권	7,026,993,685		5,304,527,923	
기타금융자산	9,129,772,484		8,792,525,681	
유형자산	11,378,497,710		11,216,239,185	
무형자산	211,489,441,758		192,295,064,737	
관계기업투자	-		225,777,424	
공동기업투자	-		5,099,855,704	
이연법인세자산	1,927,168,099		1,270,088,647	
자 산 총 계		1,266,305,616,445		1,090,486,206,984
부채				
유동부채		777,595,149,202		618,001,607,638
매입채무	724,149,155,871		581,453,198,744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기타지급채무	12,041,988,603		11,339,718,088	
기타금융부채	337,264,260		266,043,691	
당기법인세부채	11,137,622,331		8,241,338,989	
단기차입금	14,153,677,980		8,487,638,579	
유동성전환사채	1,090,200,000		1,090,200,000	
유동성상환우선주부채	1,895,110,000		-	
기타유동부채	12,790,130,157		7,123,469,547	
비유동부채		39,662,034,370		39,378,181,810
장기차입금	10,000,000		9,008,748	
상환우선주부채	-		1,873,101,162	
금융리스부채	853,934,781		-	
순확정급여부채	4,574,291,729		3,910,508,536	
이연법인세부채	34,067,208,591		33,421,897,884	
기타비유동부채	156,599,269		163,665,480	
부 채 총 계		817,257,183,572		657,379,789,448
자본				
지배주주소유지분		383,063,056,011		370,029,108,651
자본금	18,166,670,000		18,166,670,000	
기타불입자본	114,707,403,975		125,339,585,275	
기타자본구성요소	117,413,450		334,435,935	
이익잉여금	250,071,568,586		226,188,417,441	
비지배지분		65,985,376,862		63,077,308,885
자 본 총 계		449,048,432,873		433,106,417,53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266,305,616,445		1,090,486,206,984

- 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16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매출		3,143,908,414,690		2,733,773,271,320
매출원가		2,960,413,627,460		2,578,986,645,576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매출총이익		183,494,787,230		154,786,625,744
판매비와관리비	119,804,374,758		97,943,142,780	
영업이익		63,690,412,472		56,843,482,964
기타영업외수익	15,370,901,489		9,500,522,357	
기타영업외비용	15,244,990,778		10,597,983,723	
금융수익	2,314,626,531		2,564,814,495	
금융비용	682,298,494		603,244,604	
지분법손익	(144,102,781)		(488,962,874)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77,790,822		-	
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	517,289,178		-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221,951,22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5,677,677,219		57,218,628,615
법인세비용	16,112,035,152		13,078,506,238	
당기순이익		49,565,642,067		44,140,122,377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80,432,914		566,605,568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105,163,656		739,461,715	
법인세효과	(24,730,742)		(172,856,14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217,051,837)		507,509,594
해외사업환산손익	152,492,079		137,161,714	
지분법자본변동	(369,543,916)		370,347,880	
당기총포괄이익		49,429,023,144		45,214,237,539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41,590,130,572		40,452,095,267	
비지배지분	7,975,511,495		3,688,027,110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41,474,140,660		41,543,033,178	
비지배지분	7,954,882,484		3,671,204,361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1,170		1,126
희석주당순이익		1,170		1,126

-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16 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5 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총 계
2014.01.01 (전기초)	18,166,670,000	134,652,554,025	(16,800,000)	(173,239,533)	194,136,394,731	(1,944,535,557)	344,821,043,666
당기순이익	-	-	-	-	40,452,095,267	3,688,027,110	44,140,122,377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	583,262,443	(16,656,875)	566,605,568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37,327,588	-	(165,874)	137,161,714
지분법자본변동	-	-	-	370,347,880	-	-	370,347,880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	-	-	9,815,054	9,815,054
연차배당	-	-	-	-	(8,983,335,000)	-	(8,983,335,000)
자기주식 취득	-	-	(9,296,168,750)	-	-	-	(9,296,168,750)
사업결합	-	-	-	-	-	61,340,825,027	61,340,825,027
2014.12.31 (전기말)	18,166,670,000	134,652,554,025	(9,312,968,750)	334,435,935	226,188,417,441	63,077,308,885	433,106,417,536
2015.01.01 (당기초)	18,166,670,000	134,652,554,025	(9,312,968,750)	334,435,935	226,188,417,441	63,077,308,885	433,106,417,536
당기순이익	-	-	-	-	41,590,130,572	7,975,511,495	49,565,642,067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	101,032,573	(20,599,659)	80,432,91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52,521,431	-	(29,352)	152,492,079
지분법자본변동	-	-	-	(369,543,916)	-	-	(369,543,916)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	-	-	185,493	185,493
연차배당	-	-	-	-	(17,808,012,000)	(5,047,000,000)	(22,855,012,000)
자기주식 취득	-	-	(10,632,181,300)	-	-	-	(10,632,181,300)
2015.12.31 (당기말)	18,166,670,000	134,652,554,025	(19,945,150,050)	117,413,450	250,071,568,586	65,985,376,862	449,048,432,873

2) 별도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6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15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자 산				
유동자산		778,346,148,279		718,703,638,474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247,431,673		126,484,900,099	
매출채권	680,609,898,569		539,136,056,257	
기타수취채권	329,582,436		3,162,533,010	
기타금융자산	3,443,660,578		22,434,645,997	
재고자산	75,591,534,096		25,146,567,586	
기타유동자산	8,124,040,927		2,338,935,525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비유동자산		163,203,727,312		140,383,134,956
장기매출채권	566,614,523		1,586,686,339	
기타수취채권	3,645,727,500		3,249,916,330	
기타금융자산	9,078,149,121		8,782,025,681	
유형자산	4,244,897,538		5,159,694,176	
무형자산	16,613,243,852		23,070,639,972	
관계기업투자	-		498,000,000	
공동기업투자	-		5,104,500,000	
종속기업투자	127,632,199,781		91,700,919,407	
이연법인세자산	1,422,894,997		1,230,753,051	
자 산 총 계		941,549,875,591		859,086,773,430
부 채				
유동부채		558,992,181,470		489,438,846,292
매입채무	536,374,985,843		471,435,929,774	
기타지급채무	6,197,229,975		6,161,604,643	
기타금융부채	189,571,395		315,643,691	
당기법인세부채	6,656,391,755		6,352,413,118	
기타유동부채	9,574,002,502		5,173,255,066	
비유동부채		3,046,789,733		3,577,942,862
장기차입금	10,000,000		-	
순확정급여채무	3,036,789,733		3,577,942,862	
부 채 총 계		562,038,971,203		493,016,789,154
자 본				
자본금	18,166,670,000		18,166,670,000	
기타불입자본	114,707,403,975		125,339,585,275	
이익잉여금	246,636,830,413		222,563,729,001	
자 본 총 계		379,510,904,388		366,069,984,27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41,549,875,591		859,086,773,430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16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매출		2,605,008,143,794		2,456,139,077,872
매출원가		2,484,563,721,237		2,337,793,933,974
매출총이익		120,444,422,557		118,345,143,898
판매비와 관리비	73,792,940,728		72,758,638,935	
영업이익		46,651,481,829		45,586,504,963
기타영업외수익	19,338,010,857		9,152,599,646	
기타영업외비용	13,522,970,951		9,896,866,223	
금융수익	1,722,858,677		2,447,139,670	
금융비용	3,624,311		38,611,425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498,000,000		177,777,500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1,052,350		153,383,39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3,686,703,751		46,914,605,738
법인세비용		11,954,548,571		11,005,645,629
당기순이익		41,732,155,180		35,908,960,109
기타포괄손익		148,958,232		600,599,19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48,958,232		600,599,191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194,288,633		782,957,524	
기타포괄손익의 법인세효과	(45,330,401)		(182,358,333)	
당기총포괄이익		41,881,113,412		36,509,559,30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1,174원		1,000원
희석주당이익		1,174원		1,000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

제16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41,881,113,412		36,509,559,300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당기순이익	41,732,155,180		35,908,960,10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48,958,232		600,599,191	
이익잉여금처분액		41,881,113,412		36,509,559,300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이익준비금	-		1,780,801,200	
사업확장적립금	24,283,050,912		16,920,746,100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500원(100%) 전기 500원(100%))	17,598,062,500		17,808,012,00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11조(주식매수선택권)</p> <p>5.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 이 경과한 날로부터 주주총회에서 정한 기간내에 행사할 수 있다.</p> <p>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p>	<p>제11조(주식매수선택권)</p> <p>5.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한 날로부터 주주총회에서 정한 기간내에 행사할 수 있다.</p> <p>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p>	<p>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조항 변경</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8.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① 본 회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 하거나 퇴직한 경우</p> <p>② 본 회사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p> <p>③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8.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① 본 회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 하거나 퇴직한 경우</p> <p>② 본 회사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p> <p>③ <u>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u></p> <p>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9. <u>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u></p>	
제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5 장 이사, 이사회, <u>감사위원회</u>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감사관련 건 변경
<p>제 28 조 (이사 및 감사의 수)</p> <p>1.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한다.</p> <p>2. <u>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u></p>	<p>제 28 조 (이사의 수)</p> <p>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한다.</p>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감사관련 건 삭제
<p>제 29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p> <p>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 또는 보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p>	<p>제 29 조 (이사의 선임)</p> <p>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 또는 보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는</p>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감사관련 건 삭제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8조 1항에서 정하는 최소 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u>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u></p>	<p>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8조에서 정하는 최소 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30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p> <p>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2.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p>	<p>제 30 조 (이사의 임기)</p> <p>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감사관련 건 삭제</p>
<p>제 32 조 (감사의 직무)</p> <p>1.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 및 영업을 감사한다.</p> <p>2. <u>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p>	<p>제 32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p> <p>1.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 및 영업을 감사한다.</p>	<p>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감사관련 건 변경</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4.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5.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6.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3.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4.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5. 제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6.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7.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p>	
<p>제 33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p> <p>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2시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p>	<p>제 33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p> <p>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p>	<p>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감사관련 건 삭제</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차를 생략할 수 있다.	수 있다.	
-	<p>제 33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 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6.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항 신설
제 37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37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감사관련 건 삭제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38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p> <p>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한도를 정하고 세부지급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보수규정에 따른다.</p> <p>2.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p>	<p>제 38 조 (이사의 보수)</p> <p>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한도를 정하고 세부지급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보수규정에 따른다.</p> <p>2.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p>	<p>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감사관련 건 삭제</p>
<p>제 38 조의 2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p> <p>1.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p> <p>2.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 38 조의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p> <p>1. 회사는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p> <p>2.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감사관련 건 삭제</p>
<p>제 4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p> <p>1.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대차대조표</p> <p>② 손익계산서</p> <p>③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p>	<p>제 4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p> <p>1.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대차대조표</p> <p>② 손익계산서</p> <p>③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p>	<p>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감사관련 건 변경</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p> <p>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p> <p>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부 칙</p> <p>1. 이 정관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정관 변경에 따른 부칙 추가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규일	1957.07.01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김성균	1965.10.24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민순홍	1967.06.28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규일	아이마켓코리아 임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삼성에버랜드 마케팅 지원 상무 삼립식품 총괄전무	해당사항 없음
김성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등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지안 등 대표변호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해당사항 없음
민순홍	연세대학교 정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테네시대학교 경영학 박사 조지아서던대학교 조교수 오클라호마대학교 부교수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후보자 전원 신규선임 후보자입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류재준	1965.09.04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김성균	1965.10.24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민순홍	1967.06.28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류재준	메리츠금융지주 전무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무관리 박사 삼성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 삼성투자신탁운용 투자전략센터 센터장	해당사항 없음
김성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등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지안 등 대표변호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해당사항 없음
민순홍	연세대학교 정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테네시대학교 경영학 박사 조지아서던대학교 조교수 오클라호마대학교 부교수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후보자 전원 신규선임 후보자 입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최고 한도액

(단위: 명, 억원)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6 (1)	8 (3)
최고 한도액	34	34

※ 기타 참고사항

전기 이사의 수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5년 10월 20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김민환 사외이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최고 한도액

(단위: 명, 억원)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최고 한도액	4	4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 임직원 동기부여 및 성과 중심 보상 체계 확립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김규일	임원	사장	보통주	20,000
김태성	임원	전무	보통주	10,000
김천희	임원	전무	보통주	10,000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남인봉	임원	전무	보통주	10,000
김학근	임원	상무	보통주	10,000
○○○ 외 2명	직원	직원	보통주	5,000
○○○ 외 5명	직원	직원	보통주	4,000
○○○ 외 5명	직원	직원	보통주	2,000
○○○ 외 37명	직원	직원	보통주	1,500
○○○ 외 93명	직원	직원	보통주	1,000
총(152)명	-	-	-	총(262,000)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부여방법	자사주 교부	'15년말 현재 자기주식 747,215주 보유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 262,000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행사가격: 관련법을 준용하여 주주총회 전일 기준으로 행사가격을 산정하며,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 행사기간: 2018년 3월 29일 ~ 2021년 3월 28일	-
기타 조건의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결의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주식수	부여가능주식의 범위	부여가능주식의 종류	부여가능주식수	잔여주식수
35,943,340	발행주식총수의 15%	보통주	5,391,501	5,391,501

-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